

(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강서구 ----- ----- ----- 영유아들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방사성 물질”이란 세슘, 요오드, 스트론튬, 플루토늄 등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.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.</p> <p>3. “영유아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방사성물질”이란 ----- ----- 등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2. -----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----- ----- -----.</p>

4. “방사능 등 유해물질”이란 방사능, 농약, 중금속, 유독성물질, 미세플라스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,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방사선물질 검사 체계) ① 구청장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,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. 다만,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3. -----
----- 유독성물질 -----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

----- 영유아 -----

제4조(방사성물질 검사) <삭 제>

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2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,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 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.

제5조(급식안전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해,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.

1.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
2.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
3.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
4. 시민단체 추천인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<신 설>

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(이하 “모니터링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관내 -----
2. 급식 안전 전문가
3. 시민단체 추천인

<삭 제>

<삭 제>

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

제6조(정보공개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)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운영위원회,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 및 연수)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

있다.

1. 검사대상 기관, 시기, 횟수 등

2.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·수량·주기·검사방식 등

3. 학부모, 지역주민, 영양사,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

제6조(정보공개) -----

지체 없이-----
-----.

제7조(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) -----

----- 즉시 해당 어린이집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-----
-.

제8조(교육 및 연수) ① ----- 어린이집 -----
----- 방사성물질-----
-----.

② -----

등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)
학교 및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-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)
「영유아보육법」-----

-----.

부 칙

----- 2023년 1월 1일부터 --
--.